



개인연금의 이해(5): 금융권역별 신 개인연금의 특징

오병국 연구원

■ 2001년에 도입된 신 개인연금(연금저축)은 일정한 세제적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소득공제 및 연금소득세 혜택이 제공되는 세금우대형 저축상품으로 각 금융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함.

- 신 개인연금은 취급하는 금융권에 따라 보험형과 신탁형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, 보험형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등에서, 신탁형의 경우 은행, 증권사,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.
- 신 개인연금의 보험형과 신탁형은 공통적으로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, 10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고, 예금자보호제도 및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,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됨.

■ 신 개인연금 중 보험형의 경우 정액납입방식이고, 원리금보장형이며,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.

- 정액납입방식이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의무화되어 있음.
- 원리금보장형은 납입액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정한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수익률이 낮아도 미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유리함.
- 연금계약의 내용은 주계약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, 주계약은 연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연금이며, 가입자가 사망보장 등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장성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.
 -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사망 특약, 암보장 특약, 성인병 특약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.
 - 손해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, 실손의료 특약, 질병사망 특약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.

- 연금지급방식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확정기간형과 종신형이,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확정기간형이 제공됨.
- 1인 당 5,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됨.

■ 이에 반해 신탁형의 경우 자유납입방식이고, 실적배당형이며, 투자수단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음.

- 매회 1만 원 이상, 분기 300만 원 가입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, 보험회사와 달리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입자가 계획적으로 적립해야 함.
-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이지만 일정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확정기간형과 달리 좌수분할식임.
 - 좌수분할식은 매번 연금지급 시 적립액 잔액을 잔여 연금지급회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것임.
- 신탁형은 적립금이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됨.
 - 다만, 납입원금을 보장해주는 은행의 연금신탁은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됨.
- 연금저축을 위한 투자수단이 채권형, 주식형, 안정형 등 다양하므로 투자에 대한 위험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.

〈표 1〉 금융권역별 개인연금의 특징

구분	보험형		신탁형	
	생보사	손보사	은행	증권투자회사, 투신사
납입방식	정액식	정액식	자유식	자유식
수익률	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	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	실적배당	실적배당
연금지급방식	확정기간형, 종신형	확정기간형	확정기간형	확정기간형
중도해지 시	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	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	원금 및 일정이자지급	원금 및 일정이자지급
주요 서비스	각종 생활보장	교통사고 및 상해사고 보상	담보 및 신용대출, 거래실적대출	주식형과 공사채형 상호 전환
예금보호여부	보호	보호	보호	비보호 ¹⁾

주: 1)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적립하여 보호함.